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29(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4. 10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4. 10

라. 상정일자 : 2014. 4. 29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안 제20조제3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우리시는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식품안전관리 정보 제공, 식생활안전관리 단체교육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문 식생활상담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최초 3년간은 ‘대한영양사협회 인천광역시영양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년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일반용역계약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타 시·도의 유사 센터¹⁾가 대부분 교육대상을 어린이로 국한한 것에 반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는 영유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전 세대에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등 식품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1) 수도권 소재 유사성격 센터(11개소) : 서울시 식생활정보센터, 서울시 8개 자치구 식생활정보센터, 안양시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으로 부여한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강병수, 박순남, 신현환 위원

-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일반용역체결하면서 문제점은 있는가?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는가? 3년 동안 운영하던 대한영양사회 인천지회에서 가천의과대 산학연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 대부분 위탁이나 계약은 사업기간의 보장을 위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정보센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이유는?
- 수정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 변 >

○ 보건복지국장

- 2009년 10월 식품안전정보센터 개관 당시에는 대한영양사회 인천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조례상 민간위탁 조항이 없어 일반용역으로 계약체결을 하면서 회계과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음.

교육, 홍보업무라는 특성상 인천지역의 단체가 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으며, 대한영양사회 인천지회는 독립법인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음.

- 식품안전정보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일반용역계약이다보니 계약당사자인 회계과의 처리대로 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며 동감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신현환·강병수·박순남·제갈원영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제3항 중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② (생략) <신 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u>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u>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다.</u>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② (생략) <u><신 설></u>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u>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u> <u>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u> <u>위탁할 수 있다.</u>